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69

제출연월일 : 2004. 7 . 3 .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징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세목이므로 세율을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개인균등할 주민세 3,000원을 5,000원으로 인상(안 제20조제1항제1호가목)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

○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

○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제2004 - 197호 (2004.6.7 ~6.28)

⇒ 의견 제출사항 없음

4. 본문 : 붙임참조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중 "3,000원" 을 "5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세율)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개인 가.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: 3,000원 나. (생 략) 2. (생 략) ② (생 략)	**제20조(세율)** ---------- ----------. 1. ---- 가. ---------- 5,000원 나. **(현행과 같음)** 2. **(현행과 같음)** ② **(현행과 같음)**